



한국연구재단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
알림

1. 관련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(2019.10.21.)

2. 중소기업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 사유

-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

(참고) 2018년 연구장비·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: 총 4,163억원
 (출처 : 2018.1.1.~12.31. 중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)
 ⇒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(0.8~2.3%로 산출) 추정액: 33.3억원 ~ 95.8억원

나. 규정개정 결과

- (적용범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
- (시행일자) 2019.10.21
- (주요 변경사항)

구분	현 행(As is)	개선방안(To be)
직접비 항목별집행방법	비목별 집행방법을 별도로 정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목별 집행방법 삭제 (처리 규정 별표5) ⇒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
(예시) 연구장비·재료비 결재방법	연구비카드 (외국직수입 등 일부는 계좌이체 허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

3. 아울러, 각 연구기관에서는 동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여 원활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규대비표(별표

5) 1부. 끝.

한 국 연 구 재 단 이 사 장



수신자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

담당	강복임	팀장	김태성	실장	김해도	본부장	전결 11/06 황준영
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	연구정산팀-14745	(2019.11.05.)	접수	(2019.11.06.)
우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		/ bikang@nrf.re.kr	
전화	042-869-6463	전송	/ bikang@nrf.re.kr	/ 공개